

# 다양한 가족, 다양한 현상

KORER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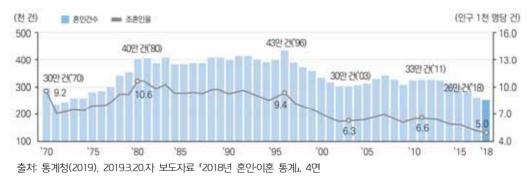
### 1. 사회변화와 가족다양성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변화의 역동은 빠르게 진행 중이다. 기존의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을 넘어탈가족·탈제도, 개별화, 재구성, 다양한 방식의 관계 맺음의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혼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규 범적 태도는 해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2018년 혼인건수는 25만 7천 6백 건으로 전년대 비 2.6%(-6천 8백 건) 감소하였으며, 2012년 이후 7년 연속 감소 추세이다<sup>1)</sup>.

2018년 사회조사 결과2)에 의하면, 13세 이상 인



[그림 1]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1970-2018

<sup>\*</sup> 민법을 전공하고, 가족 관련 법 분야를 주로 연구함. 주요 연구물로는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젠더법학(제10권 제2호),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가족법연구 제31권 2호) 등이 있음.

<sup>1)</sup> 통계청(2019), 2019.3.20.자 보도자료 '2018년 혼인·이혼 통계」, 4면

<sup>2)</sup>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15면



출처: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요약 1면

[그림 2] 결혼에 대한 견해

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2010년 64.7%에서 2018년에는 48.1% 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혼동거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6.4%로, 2010년

(40.4%)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8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다.<sup>3)</sup>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는 30.3%가 동의하였으며, 역시 2010년(20.6%)에 비해 증가하였다.<sup>4)</sup>

[그림 2]에 의하면 2018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태도가 결혼해 야한다는 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도혼에 대한 진입 여부에 대해서 당위가 아닌 열려진 태도가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인제도에서 벗어나는 이혼에 대한 태도 역시 지속적으로 수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8년 46.3%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0년 56.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33.2%로 나타났다.5 1인가구의 증가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통계청의

(표 1) 연도 및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2000<sup>™</sup>~2017<sup>®</sup>)

(단위: 천 가구, %)

가구원수	2000년 <sup>T</sup>	2005년 <sup>T</sup>	2010년 <sup>T</sup>	2015년 <sup>R</sup>	2016년 <sup>R</sup>	2017년 <sup>R</sup>
일반가구	14,312	15,887	17,339	19,111	19,368	19,67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ગ	2,224	3,171	4,142	5,203	5,398	5,619
	(15.5)	(20.0)	(23.9)	(27.2)	(27.9)	(28.6)
2인	2,731	3,521	4,205	4,994	5,067	5,260
	(19.1)	(22.2)	(24.3)	(26.1)	(26.2)	(26.7)
3인	2,987	3,325	3,696	4,101	4,152	4,179
	(20.9)	(20.9)	(21.3)	(21.5)	(21.4)	(21.2)
4인	4,447	4,289	3,898	3,589	3,551	3,474
	(31.1)	(27.0)	(22.5)	(18.8)	(18.3)	(17.7)
5인 이상	1,922	1,582	1,398	1,224	1,200	1,142
	(13.4)	(10.0)	(8.1)	(6.4)	(6.2)	(5.8)

출처: 통계청(2018), 2018.8.27.자 보도자료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40면

<sup>3)</sup>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15면

<sup>4)</sup>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15면

<sup>5)</sup>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15면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5년 이전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이다. 2017년 주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28.6%)로전년에 비해 221천 가구(0.7%p) 증가하였으며, 2인가구가 26.7%, 3인 가구는 21.2%, 4인가구는 17.7%에 불과하다. 기비혼의 증가, 노인 부부로 이루어진 2인 가구와 이들의 사별·이혼으로 인한 노인 1인 가구의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근대 핵가족의 전형으로 생각되었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족으로 함께 사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전형은 아니게 되었다.

### 2. 다양한 가족, 현상과 문제

가족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새로운 방식의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발견되고, 개별화의 욕구와 함께 친밀감과 돌봄의 욕구도 공존 하다.

가족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인 동시에 가족이 나에게 위험이 되기도 한다. 가족으로부터의 단절과 개별화로 인하여 취약해지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족으로 함께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을 함께 감수해야 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지금의 가족 변화의 역동은 개인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자기 생존을 위한 역동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부장적 가족 제도에서 벗어나다양한 삶의 방식을 형성해나가는 과도기적 현상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과 현상을 위기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족 다양성으로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 속에는 기존에 공고했던 정상가족 이데 올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갈등 이 분출되기도 한다.

다양한 가족변화의 현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는 기존의 가족 구성과는 다른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또는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편과 장애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를 넘어서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의 차별적 인식은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정상가족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지향과 노력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기도 한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되지 않고 불필요하게 많은 개인의 사적 정보가 노출되고 요구되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생존의 노력이다.

가족 변화에 수반하는 현상들은 가족 다양상의 변화 그 자체가 대단히 문제적인 것으로 착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가족 변화라는 사회의 현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 이다. 차별적 제도는 차별적 사회 인식을 재생산하 고 강화한다.

### 3.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 제도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소위 정상가족 중심의 낡은 제도는 다양한 가족과 그 구성원에게 매우 불편

<sup>6)</sup> 통계청(2018), 2018.8.27.자 보도자료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40면

<sup>7)</sup> 통계청(2018), 2018.8.27.자 보도자료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40면

하고 차별적이다. 출생부터 사망까지 살면서 일상에서 이용하고 접하게 되는 제도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은 차별받고 소외된다.

### 가.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법률혼 중심의 법제도는 혼인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보장되는 권리와 제도적 프레임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은 출생부터 시작된다. 민법은 자녀를 출생시부터 부모가 법률혼관계에 있는 지에 따라 지위와 명칭을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로 구별한다. 그리고 이러한 민법의 구분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신고서에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제2호). 축복받아야할 출생신고시부터 출생신고서식에 출생아의 지위를 "혼인 외의 자"라는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낙인적인 명명과 이를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비혼의 부·모에게도 그 자녀에게도 폭력적이다.8)

## 나. 다양한 가족에 차별적 인식을 강화하는 부성 (父姓)우선의 원칙

민법은 자녀의 성(姓)을 정함에 있어 아버지의 성 (姓)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성(父姓)우선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여 전히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이외에 모(母)의 성(姓)을 따르는 경우는 부가 외국인인 경 우,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10》 부성(父姓)우선 의 원칙 하에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는 경우 는 혼인신고시 예외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비혼으로 자녀를 출산을 하는 경우, 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성(姓)을 따르는 다양한 가족의 자녀들을 예외적인 경우로 상정하고 민법의 태도는 이들 다양한 가족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일조한다.

또한 자녀들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 출생시에 부나 모의 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제도는 예컨대 재혼가족과 같은 결합가족에 있어 자녀들 간 서로 다른 성(姓)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매우예외적이고 도드라지게 만든다. 재혼가족에 있어서자녀의 성본변경이 재혼가정의 남성 가장(家長) 중심으로의 변경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한 가족에 포용적이지 못한 사회와 제도 하에서 결국 정상가족으로의 외관을 갖추고자 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부계 성·본의 강요는 사실혼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혈연 가족, 동성애 가족, 국제결혼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 재를 더욱 '비정상화'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가족들이 출연하고 지속되는 것을 지양하는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은 '다른' 가족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차별한다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획일적인 가족 구성 형태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1)

<sup>8)</sup>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비혼 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64면.

<sup>9)</sup>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앞의 보고서, 39면.

<sup>10)</sup>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앞의 보고서, 39면.

### 다.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배우자 출산 휴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바람직한 개정이지만,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비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들은 파트너가 자신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다.12) 혼인율이 감소하고, 가족 유형과 관계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의 이용이 유연해질 수 있도록 사회의변화를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13)

### 라.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

다양성의 보장은 개인의 가족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단지 행정의 편의를 위해 배려 없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나가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가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요구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이기도 하다. 매년 교육현장에서 되풀이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는 행정 관행을 예로 들 수 있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가족이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위장전입의 소지가 있는 학생 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과 민감한 정보를 기재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된다.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수성 부족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배정업무 관련 계획에 전가족미등재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소명자료를 [전가족미등재사유서] 등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광역시도 교육청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원청에서 일선에 차별적이고 민감한 사항을 사유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전가족미등재사유서] 사유 표기 사항에는 학생의 가족형태 등 민감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 이혼", "부모 사별", "부모 별거" "부 또는모의 행방불명"등의 사유를 서식에 표기하거나, 이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14)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따라 모 교육청의 경우 소명자료를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요구하는 사례(모든 혼인 이력이 표기됨), 모 지원청의 "편부모"라는 표현이 사유서 서식 사례 등도 조사된 바 있다. 15)이 교육현장 사례들에서 "전가족"이라는 표현은 법률혼 관계의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있다. 16)다양한 가족의 포용을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마. 비혼자의 재생산권 및 가족구성권과 난임지원

가족의 구성은 파트너와의 관계로서만 형성되는

<sup>11)</sup> 양현아(2018),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사하는 몇 가지 이유",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2주년 심포지엄(2018. 5. 11.) 자료집, 25면.

<sup>12)</sup> 송효진·김영란(2018), 앞의 보고서, 94면.

<sup>13)</sup> 송효진 · 김영란(2018), 앞의 보고서, 94면

<sup>14)</sup> 송효진·김영란(2018), 혼인외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발굴 연구, 여성가족부, 78면

<sup>15)</sup> 상세 사례는 송효진·김영란(2018), 앞의 보고서, 78면 이하 참조.

<sup>16)</sup> 송효진·김영란(2018), 앞의 보고서, 78면 이하 참조.

것은 아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가 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자녀와의 관계형성 에 있어서의 제도적 허용과 지원은 법률혼 부부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법률혼 부부이든 비혼의 커플 이든 비혼의 싱글이든 누구나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사회적 제도적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난임 지원에서 있어서 혼인 여부 요건 역시 자녀와의 관 계를 형성할 가족구성권을 비혼자는 제대로 존중받 지 못하며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을 보여준 다.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난임극복지원사업은 "부 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정상가족에게만 임신・출산을 지원한다는 법 제의 편협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17) 최근 난임지 원에 있어서 사실혼 부부에까지로 요건을 완화한다 고는 하지만18), 여전히 가족 구성권에 있어서의 혼 인 또는 겨우 준혼인(사실혼) 관계까지를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계가 나타난다.

### 바. 사실혼 · 동거 커플의 무연고 장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소외는 출생신고 뿐이라 사망과 장례에서까지도 나타난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법률혼 부부가 아니어서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 밖에 없었다는 기사들을 종종 접할 수 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라서 아내의 시신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대요." 지난해 5월 A씨는 아내인 강모씨를 떠나 보냈다.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어도 20여년 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였다. 그러나 A씨는 아내의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씨가 사망한 병원에서 시신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에서는 강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결국 강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 A씨는 "장례만 치러줬어도 마음이 가벼웠을 것"이라고 했다.19)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상의 차별과 소외는 삶의 주기에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유연한 제도적 접근과 개선이 필요하다.

### 4. 나아가야할 가족정책과 제도의 방향

다양한 가족과 다양한 현상에 대응하여야 하는 정책과 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고민과 과제 를 떠안게 되었다. 경계를 넘나들며 움직이고 변화 하고 정형적이지 않은 유동적인 어떤 것, 정의하고자 하면 어느새 그 정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인 존재를 정책 대상으로 대면해야하는 시대인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포용을 위해서는 가족 정책 및 제도개선에 있어 개선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가장 소극적 단계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와 차별의 금지, 그리고 가족정책에의 포용, 그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가족을 구성할 권리의 보장까지를 의미한다.

<sup>17)</sup> 김동식·송효진·동제연·이인선(2018),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37면.

<sup>18)</sup> 관련 내용의 정부의 발표 및 모자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임.

<sup>19)</sup> 한국경제, 2019.9.21.자 보도 "20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했다고 아내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03861i 최종 접속일 2019.9.22)

첫째 가장 소극적 단계로서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현존하는 차별 제도를 시정·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 제도에 있어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한 차별적인 제도가 현존하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과 관행에 있어 차별과 소외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둘째, 가족 정책에 있어 유형별 접근의 한계를 인 정하고, 열린 관점으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야 한다. 예컨대 가족 정책의 대상으로서의 가족에 "사실혼 부부"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범주를 확장 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유형별 확장은 결국 또 다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소외와 배제를 가져온다. 유형별 접근으로 인하여 무한 반복되는 가족 범주의 한계를 극복해야한다.

셋째, 가족구성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탈제도 화의 역동 속에서 제도적 지원의 접점을 어떻게 마 련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김동식·송효진·동제연·이인선(2018),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김영란(2018), 혼인외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발굴 연구, 여성가족부

송효진·박복순·최진희·신옥주(2018), 비혼 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양현아(2018), "민법의 부계성본주의를 문제시하는 몇 가지 이유",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호주제 폐지 10년, 사라지지 않은 호주제의 잔재 부성주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2주년 심포지엄(2018. 5. 11.) 자료집, 7-33면.

#### 참고 사이트

통계청(2019), 2019.3.20.자 보도자료 「2018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2018), 2018.11.6.자 보도자료 「2018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통계청(2018), 2018.8.27.자 보도자료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한국경제, 2019.9.21.자 보도 "20년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했다고 아내 장례도 못 치렀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9203861i 최종 접속일 2019.9.22.)